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1. 3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기대효과

#### 가. 계획의 배경

- 2018년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간 연결사업('18.12개통) 및 주변 대규모 택지(동탄, 오산세교2 등) 개발로 인하여 경부고속도로의 판교~한남구간의 교통량 \* 급증
  - \* 2018년 통계연보 기준 동 구간 일교통량 35만대/일 → 40만대/일로 급격히 증가
-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고속도로 Missing에 기인한 양재대로(선암영업소~양재나들목) 및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구간의 교통 지·정체가 심화되어(LOS "F") 개선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상기 요인으로 인근 지역주민(서초/우면보금자리 등)의 교통불편으로 인한 교통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매년 교통혼잡비용 또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 본 사업은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여 양재대로 및 경부고속도로의 지·정체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 나. 사업 시행 시 기대효과

- 본 사업 시행 시 경부고속도 구간의 교통량 분산효과(약48,000대/일)로 상시 지·정체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양재대로, 분당내곡 고속화도로의 교통량 감소 및 지·정체 완화가 기대됨
  - \*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13,525대/일(6%), 양재대로 교통량 22,923대/일(15.4%), 분당내곡 고속화도로 교통량 14,424대/일(11%) 감소
- 서울서남부권(관악, 동작, 구로 등)의 경부고속도로 이용 편리성 향상 기대
  - 현재 서울서남부권(관악, 동작, 구로 등)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고속도로의 부재로 해당 지역주민 교통불편 지속
  - 본 사업 시행 시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에서부터 강남순환로 사당나들목까지 16분 소요 (통행시간 40% 감소)
  - \* 기존 서울서남부권(관악, 동작, 구로)의 경부고속도로 이용경로는 다음과 같음
    - 1) 남부순환로 이용경로(82분 소요) : 남부순환로→서초나들목→경부고속도로
    - 2) 강남순환로 이용경로(48분 소요) : 강남순환로→양재대로→양재나들목→경부고속도로
- 경부-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사업(금토분기점) 시행에 따른 경부고속도로 용량도달 문제 해소
  - 본 사업 미시행시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 구간 추가확장(현10차로→12차로)이 불가피한 상황 이나, 본 사업 시행 시는 경부고속도로 교통분산 효과로 추가확장이 불필요함

## 1.2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근거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의 “2.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비 고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 나.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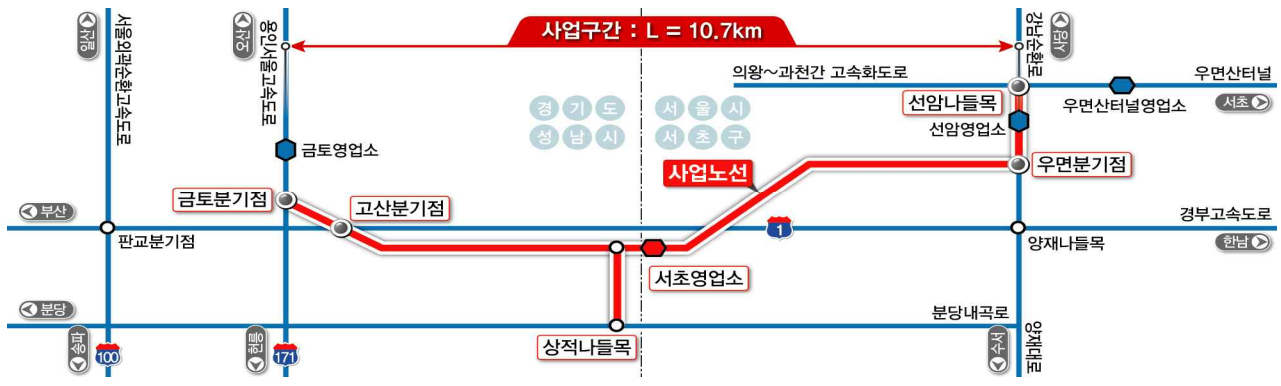
〈표 1.2 - 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	비 고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나)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

### 1.3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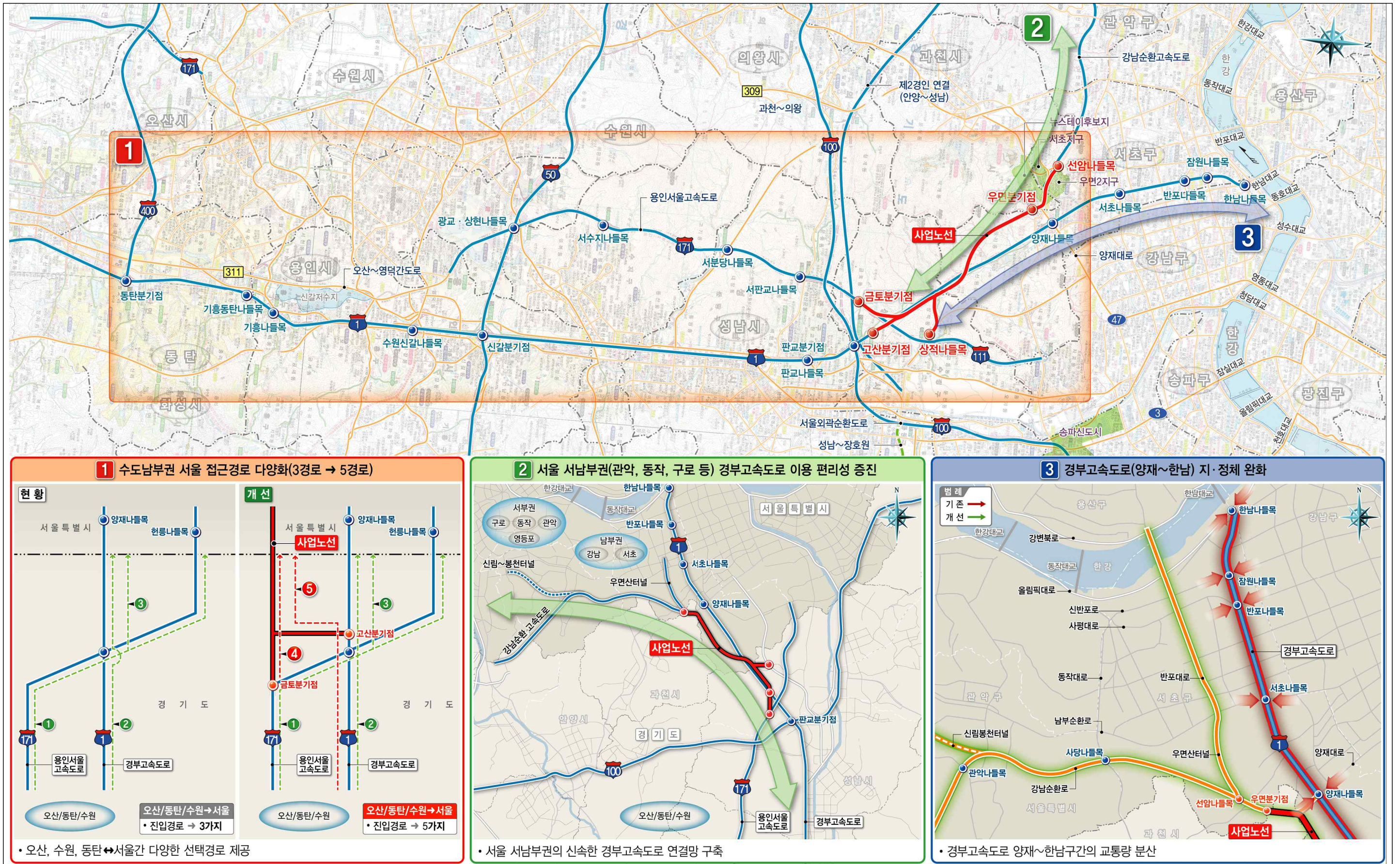
- 계획명 :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 (가칭)경부지선 고속도로(주)

구분		내용	비고
계획구간	시점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종점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도로구분		고속국도(도시지역)	
연장		10.7km	
설계속도		100km/h	
공사기간		2020년 ~ 2024년	5년
운영기간		2025년 ~ 2024년	30년



• 주요시설현황

구분		단위	주요공사량	비고
연장		km	10.7	본선 : 6.2km, 연결로 : 4.5km
토공	흙깎기	천㎡	1,471	자연상태, 암버력(578천㎡) 포함
	흙쌓기	천㎡	1,373	다짐상태
	순성/사토	천㎡	211	사토
교량공	본선	개소/m	3 / 430	서초방향
	연결로	개소/m	10 / 3,906	-
터널공	2차로 병설터널	개소/m	1 / 3,020	서초방향
			1 / 3,049	성남방향
유·출입 시설	분기점	개소	3	-
	나들목	개소	2	-
영업시설	본선영업소	개소	1	-
유지관리사무소		개소	1	-



[그림 1.3 - 1] 사업 노선도

##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1인(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1년 2월 16일 ~ 2021년 3월 12일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2.2.1 평가대상지역 설정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지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주요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분야로 구분하고 공사시 및 운영시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음

〈표 2.2 - 1〉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항 목		평가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노선 중심 반경 1.0km 이내)	• 계획시행에 따른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의 변화 예상지역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상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예상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사업노선 및 주변수계 (노선 중심 반경 1.0km 내외)	• 계획시행에 따른 수질오염 영향 예상지역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인근 기상대)	• 대기질 기초자료
		대기질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노선 중심 반경 500m 이내)	• 계획시행에 따른 대기질변화 예상지역
		온실가스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지역
		토 양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토양오염원 발생 및 입지지역
		소음·진동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노선 중심 반경 500m 이내)	• 계획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검토지역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발생폐기물에 의한 영향 예상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예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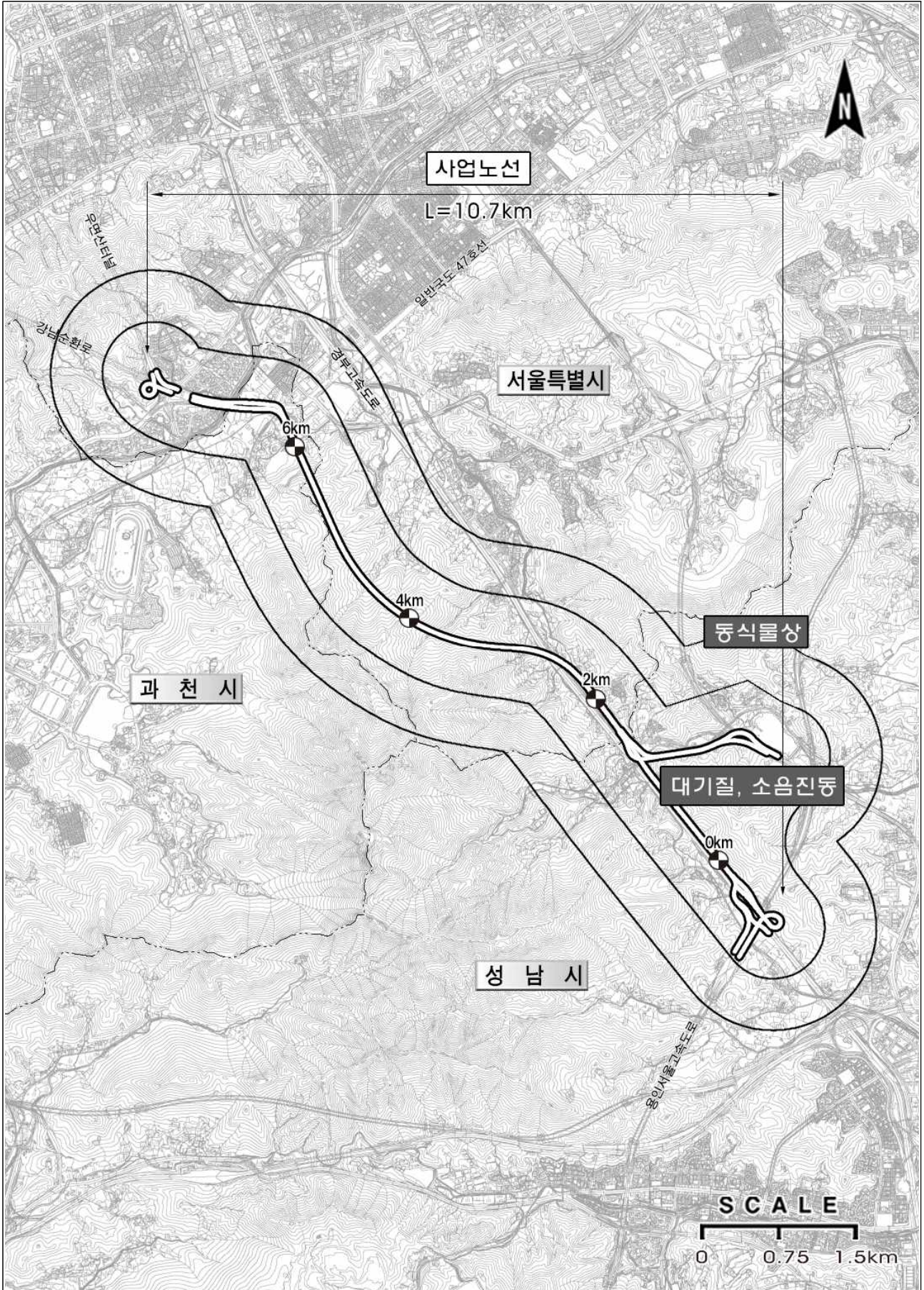
**나. 환경영향평가시**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주요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분야로 구분하고 공사시 및 운영시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였음

**<표 2.2 - 2>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항 목		평가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식물상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노선 중심 반경 1.0km 이내)	• 계획시행에 따른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의 변화 예상지역
	자연환경자산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사업노선 주변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및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상
대기환경 분야	기상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인근 기상대)	• 대기질 기초자료
	대기질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노선 중심 반경 500m 이내)	• 계획시행에 따른 대기질변화 예상지역
	온실가스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지역
수환경 분야	수질	사업노선 및 주변수계 (노선 중심 반경 1.0km 내외)	• 계획시행에 따른 수질오염 영향 예상지역
	수리·수문	사업노선 및 주변수계	• 교량설치시 홍수위 변화 및 배수, 통수 구조물 검토
토지환경 분야	토지이용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예상지역
	토양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예상지역
	지형·지질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예상지역
생활환경 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분뇨 발생
	소음·진동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노선 중심 반경 500m 이내)	• 계획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
	위락·경관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예상지역
	일조장애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일조변화 예상지역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인구 및 주거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현황검토





[그림 2.2 -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 2.2.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가. 평가항목 선정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표 2.2 - 3〉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선정사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의 훼손 및 동·식물상 변화 검토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 변화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계획시행에 따른 경관 변화 검토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검토 • 터널폐수 발생 검토 • 운영시 발생오수에 따른 영향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대기질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계획시행에 따른 대기질 변화 검토
		온실가스	• 계획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검토
		토양	• 계획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검토
		소음·진동	•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환경기준 만족여부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처리에 대한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표 2.2 - 4〉 환경영향평가항목의 설정

구 분	평 가 항 목	선 정 (제 외 )사 유
평가항목 (11개)	대기질	•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질 변화 검토
	온실가스	•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검토
	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검토 • 터널폐수 발생 검토 • 운영시 발생오수에 따른 영향
	수리·수문	• 교량설치시 홍수위 변화 검토
	지형·지질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 변화 검토
	동·식물상	•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의 훼손 및 동·식물상 변화 검토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검토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처리에 대한 검토
	소음·진동	•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환경기준 만족여부 검토
	위락·경관	•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 변화 검토
	일조장해	• 사업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일조장해 영향 검토
현황조사항목 (4개)	기상	• 대기질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검토
	토양	• 사업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검토
	인구·주거	•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변화 검토
제외항목 (5개)	악취	• 사업시행에 따른 악취발생원의 신설은 없음
	전파장해	• 사업시행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 미약
	해양환경	•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저촉 없음
	위생 및 공중보건	• 사업시행에 따른 위생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미약
	산업	• 사업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 미약

**나. 평가범위 및 방법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범위 및 평가방법은 환경부 지침[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환경부, 2013.1]에 따라 설정하였으며, 현황조사는 원칙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헌 조사 및 공공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 평가를 실시함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사업지역의 환경영향을 바탕으로 본 계획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보전 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고, 이러한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표 2.2 - 5>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구 분		평가범위	평가방법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노선 중심 반경 1.0km 이내)	• 동·식물 현황조사 • 생태계의 변화정도 비교·분석, 보전방안 검토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에 따라 현지조사 실시 -식물상·식생(반경 150m), 포유류·조류(반경 500m), 양서·파충류·육상곤충(반경 150m), 어류·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부착조류(상하류 100m)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기존자료 및 계획을 통한 지형변화 분석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종·평면도 등 계획자료 분석을 통한 경관변화 분석
수환경의 보전 (수질)		• 사업노선 주변수계 (노선 중심 반경 1.0km 내외)	• 공사시 및 운영시 수질오염원 파악 및 영향검토 • 지자체 수질오염총량협의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사업노선 인근기상대 자료조사 (최근10년)
	대기질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노선 중심 반경 500m 이내)	• 계획시행시 오염원별 발생량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1)에 따른 범위 -반경 500m	
	온실가스	• 사업노선	•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계획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산정
	토양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발생 폐유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측

〈표 2.2 - 5〉 계속

구 분		평가범위	평가방법
환경기준의 부합성	소음·진동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노선 중심 반경 500m 이내)	• 현지조사, 계획시행시 소음·진동 목표기준 설정 및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영향검토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1)에 따른 범위 -건설장비(반경 150m), 발파(반경 250m)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기존자료 조사를 통한 환경기초시설 현황조사 및 계획시행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연계처리가능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기존자료 조사 및 계획 검토를 통한 토지이용 변화 분석

(2) 환경영향평가시

〈표 2.2 - 6〉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범위	예측 및 평가방법
기 상	• 조사내용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기상개황 • 조사범위 : 사업노선 최인접 기상관측소 기상자료 • 조사방법 : 최근 10년간의 기상자료 분석	• 기존자료(기상연보)의 통계분석
대 기 질	• 조사내용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 조사범위 : 사업노선 중심 반경 약 500m 이내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1)에 따른 범위 -반경 500m •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 사업시행시 오염원별 발생량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예측 • 대기확산모델 AERMOD 이용
온실가스	• 조사내용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 되는 원단위 조사 •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그 주변지역 • 조사방법 : 기존 자료 및 문헌 조사	• 에너지 사용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수 질 (수리수문)	• 조사내용 : - 하천수환경기준항목 및 지하수수질기준항목의 현황농도 -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현황, 하수도 현황 등 • 조사범위 : 사업노선 주변 수계, 주변마을 지하수 •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 합리식을 이용한 우수유출량 산정 • 원단위법을 이용한 토사유출량 산정 • 공사시 오수에 의한 영향 예측 • 운영시 정거장 오수발생량 예측 및 오수처리계획 수립
토지이용	•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조사범위 : 사업노선 통과지역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기존자료, 통계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편입용지 파악 • 기존 문헌 및 유사사례 조사
토 양	• 조사내용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 •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 공사시 발생 폐유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지형·지질	•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사업노선 지반특성 •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현지조사와 기존 문헌 자료 참고	• 현 지형 대비 지형의 변화 정도 • 지반특성에 따른 안정성 검토 • 토공량 분석 및 토량처리계획 수립

〈표 2.2 - 6〉 계속

평가항목	평가범위	예측 및 평가방법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내용 : 식생현황, 녹지자연도, 포유류, 조류, 어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li> <li>• 조사범위 : 사업노선 중심 반경 1.0km 이내</li> <li>※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0-289호)에 따라 현지조사 실시</li> <li>-식물상·식생(반경 150m), 포유류·조류(반경 500m), 양서·파충류·육상곤충(반경 150m), 어류·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부착조류(상하류 100m)</li> <li>• 조사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li> <li>- 각 분류군별 조사방법에 의해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생태계 영향예측</li> <li>• 법적보호종 및 서식지 파괴 여부</li> <li>• 훼손수목량 예측 및 이식계획</li> <li>• 기타 보전하여야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 파악과 이들 중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대책 수립</li> </ul>
자연환경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및 지구, 보전하여야할 동·식물 등)</li> <li>•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지역</li> <li>• 조사방법 : 기존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지역 분포시 영향 및 대책수립</li> <li>•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 및 대책수립</li> </ul>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li> <li>•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그 주변지역</li> <li>• 조사방법 : 기존 통계자료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예측 및 이에 대한 처리방안</li> </ul>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내용 : 소음의 현황(환경소음 및 도로소음) 및 주요 발생원 조사</li> <li>• 조사범위 : 사업노선 중심 반경 약 500m 이내</li> <li>※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1)에 따른 범위</li> <li>-건설장비(반경 150m), 발파(반경 250m)</li> <li>• 조사방법 : 주요 소음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기존자료와의 비교·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영향 예측</li> <li>• 소음·진동이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소음·진동 예측식 및 소음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영향예측</li> </ul>
위락·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내용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li> <li>•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그 주변지역</li> <li>•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예측</li> <li>• 절·성토에 따른 경관변화</li> <li>• 사진합성기법을 통한 경관시뮬레이션 실시</li> </ul>
일조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내용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li> <li>• 조사범위 : 사업노선</li> <li>• 조사방법 : 기존자료와 문헌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량설치 등으로 인한 일조장해 예측</li> </ul>
인구 및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내용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인구 및 주거 현황</li> <li>•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li> <li>• 조사방법 : 통계연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자료(통계연보)의 분석</li> </ul>

다. 환경 현황조사 계획

〈표 2.2 - 7〉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항목별 환경 현황조사 계획

항 목	세부항목	지점수	조사횟수	
대 기 질	• PM-10, PM-2.5, SO <sub>2</sub> , NO <sub>2</sub> , CO, O <sub>3</sub> , Pb, 벤젠	6지점	2회(2계절, 계절별 3일)	
수 질	지 표	• pH, BOD, COD, TOC, SS, DO, T-N, T-P,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유량, 인산염인, 유기인, NH <sub>3</sub> -N, NO <sub>3</sub> -N,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3지점	1회
	지 하	• pH, 온도, DO, 색도, BOD, CN, 페놀, F, Hg, 유기인, 인산염인, PCB, TCE, PCE, Cr <sup>6+</sup> , Cd, Pb, Cu, Zn, Fe, Mn, Al, 노르말렉산추출물질, Cl <sup>-</sup> , NO <sub>3</sub> -N, NH <sub>3</sub> -N, NO <sub>2</sub> -N, 총대장균군, 맛, 냄새, 탁도,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일반세균, 분원성 대장균군, 알칼리도	3지점	1회
토 양	• Cd, Cu, As, Hg, Pb, Cr <sup>6+</sup> ,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BTEX, TPH, Zn, Ni, F, TCE, PCE, 벤조(a)피렌	3지점	1회	
소음·진동	• 주·야간 소음·진동 - 소음 : 주간4회, 야간2회 - 진동 : 주간2회, 야간1회	5지점	1회	
동·식물상	• 동·식물 현황조사	-	2회	

〈표 2.2 - 8〉 환경영향평가 시 항목별 환경 현황조사 계획

항 목	세부항목	지점수	조사횟수	
대 기 질	• PM-10, PM-2.5, SO <sub>2</sub> , NO <sub>2</sub> , CO, O <sub>3</sub> , Pb, 벤젠	6지점	2회(2계절, 계절별 3일)	
수 질	지 표	• pH, BOD, COD, TOC, SS, DO, T-N, T-P,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유량, 인산염인, 유기인, NH <sub>3</sub> -N, NO <sub>3</sub> -N,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3지점	3회
	지 하	• pH, 온도, DO, 색도, BOD, CN, 페놀, F, Hg, 유기인, 인산염인, PCB, TCE, PCE, Cr <sup>6+</sup> , Cd, Pb, Cu, Zn, Fe, Mn, Al, 노르말렉산추출물질, Cl <sup>-</sup> , NO <sub>3</sub> -N, NH <sub>3</sub> -N, NO <sub>2</sub> -N, 총대장균군, 맛, 냄새, 탁도,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일반세균, 분원성 대장균군, 알칼리도	3지점	3회
토 양	• Cd, Cu, As, Hg, Pb, Cr <sup>6+</sup> ,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BTEX, TPH, Zn, Ni, F, TCE, PCE, 벤조(a)피렌	3지점	3회	
소음·진동	• 주·야간 소음·진동 - 소음 : 주간4회, 야간2회 - 진동 : 주간2회, 야간1회	5지점	3회	
동·식물상	• 동·식물 현황조사	-	2회	

### 2.2.3 대안의 설정 및 검토

#### 가. 대안의 설정

##### (1) 대안의 종류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 12. 12.」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을 적용하였음
- 대안의 종류는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기타 등 6개의 종류로 구분됨.

〈표 2.2 - 9〉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구 분	선정방법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

##### (2) 대안의 선정 방법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임
- 대안을 선정할 때는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어 함

##### (3) 대안의 종류 선정

- 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대안의 종류별 선정은 상기 선정 방법을 토대로 “계획비교”, “수단·방법”, “입지” 3개의 대안 종류를 선정하였음

〈표 2.2 - 10〉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선정여부	선정방법
계획비교	선정	계획 수립시와 미수립시에 따른 비교·검토
수단·방법	선정	사업시행 방식에 따른 비교·검토
입 지	선정	사업노선의 입지에 따른 비교·검토



나. 대안의 선정

(1) “계획비교” 대안의 선정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대기 및 소음 등에 대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경부고속도로 및 양재대로의 상승 지정체 해소 및 서울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경부고속도로 이용 편리성 향상이 기대되는 1안(Action)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2.2 - 11〉 “계획비교” 대안별 검토결과

구 분	1안 : 계획수립 (Action)	2안 : 계획미수립 (No Action)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고속도로 직접연결하여 효율적인 고속도로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양재대로의 교통량 분산효과 및 지정체 해소</li> <li>• 서울 서남부권(관악, 동작, 구로 등) 경부고속도로 이용 불편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며, 현재의 환경여건 유지로 환경민원 발생 없음</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 일시적인 환경영향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부고속도로 및 양재대로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행량 증가로 인한 경부고속도로 및 양재대로 주변 혼잡 가중</li> <li>• 강남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교통단절구간(Missing) 교통 지정체 심화</li> <li>• 교통 지정체 심화로 인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가중</li> <li>• 지역주민(서초/우면 보금자리 등)의 교통 불편 및 민원 지속</li> </ul>
선 정	○	

(2) “수단·방법” 대안의 선정

- 고속도로 건설방식(사업시행 방식)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으며, 평가결과 “대안1”을 최적 대안으로 선정함

〈표 2.2 - 12〉 “수단·방법” 대안별 검토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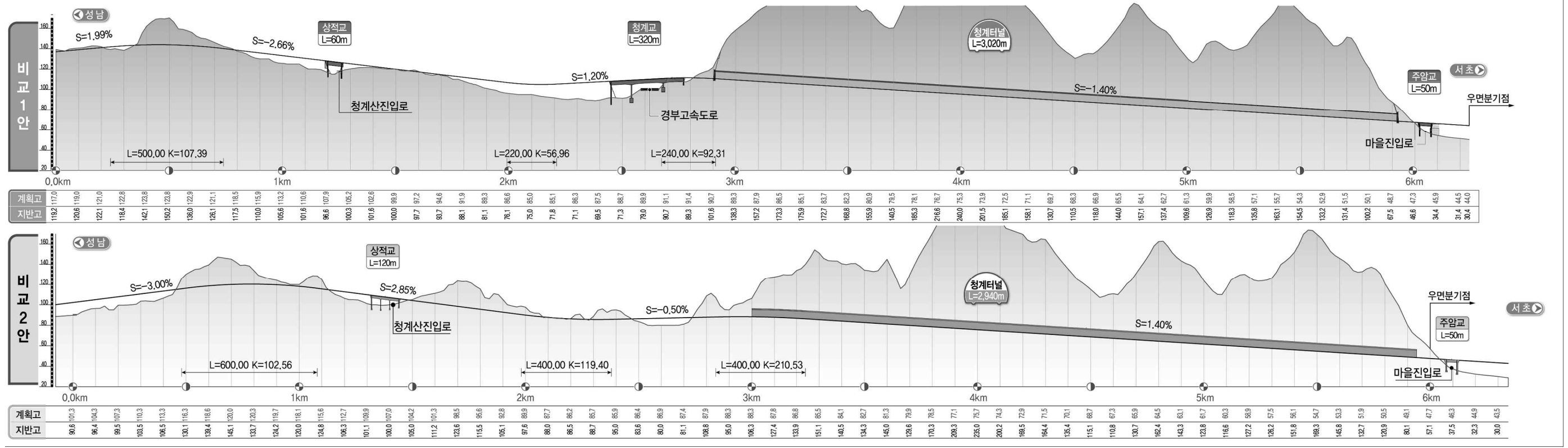
구 분	1안 : 민간투자사업 방식	2안 : 정부재정사업 방식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제성을 확보하여 조속한 사업시행 가능</li> <li>• 정부의 재정부담 최소화 도모</li> <li>• 조속한 사업수행에 따른 적기의 교통인프라 구축이 가능하여 국민편의 증대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재정부담 발생</li> <li>• 사업지연에 따른 교통인프라 공급부재로 국민 불편 가중</li> </ul>
선 정	○	
선 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최소한의 국가재정 부담으로 조속한 교통인프라의 적기 구축이 가능하여 국민의 편의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1안을 선정함</li> </ul>	

(3) “입지” 대안의 선정

- 평면선형에 따른 2개의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평가결과 “대안1”을 최적 대안으로 선정함

〈표 2.2 - 13〉 “입지” 대안별 검토결과

구 분		대안1(비교1안)	대안2(비교2안)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부고속도로 우측병행통과(한남방향)</li> <li>• 본선 경부고속도로 횡단</li> <li>• 옛골유원지 미저축 통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부고속도로 좌측병행통과(부산방향)</li> <li>• 본선 경부고속도로 미횡단</li> <li>• 옛골유원지 저축</li> </ul>
연 장 ( km )		L=10.7km (본선 6.2km, 연결로 4.5km )	L=10.5km (본선 6.0km, 연결로 4.5km )
출 입 시 설		나들목 2개소, 분기점 3개소	나들목 1개소, 분기점 3개소
교 량 ( km )		L=4,336m / 13개소	L=3,989m / 11개소
터 널 ( km )		L=3,020m / 1개소	L=2,940m / 1개소
평 면 선 형	최 소 곡 선 반 경	R=750m	R=1,800m
	최 대 종 단 경 사	S=2.70%	S=2.85%
토 공	깎 기	147만㎡	169만㎡
	쌓 기	137만㎡	83만㎡
	사 토	21만㎡	111만㎡(증 79만㎡)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li> <li>• 토공량 균형계획</li> <li>• 옛골유원지 저축 배제로 민원발생 최소화</li> <li>• 사업노선 주변 군부대 시설 이격통과 및 시점부 산림지역 훼손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1 대비 공사비 증가</li> <li>• 사토량 증가</li> <li>• 옛골유원지 저축(A=2.1만㎡)으로 대규모 민원발생이 예상됨</li> <li>• 사업노선 주변 군부대 시설 저축</li> <li>• 시점부 산림지역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발생</li> </ul>
선 정		○	
선 정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부고속도로 우측(한남방향)병행통과로 옛골유원지를 이격통과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균형있는 토공량 계획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며, 산림지역 훼손 최소화가 가능한 대안1을 선정함</li> </ul>	



[그림 2.2 - 2] 대안노선도

## 2.2.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

####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국토교통부), 협의기관(환경부) 및 관계 행정기관(서울시, 경기도, 서초구, 성남시, 과천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기간 :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공고 주체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
- 공고 시기
  -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 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 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성남시, 과천시, 서초구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공람 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서 제외)
- 공람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성남시, 과천시, 서초구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 (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가) 설명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설명회 개최 주체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
- 설명회 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내
- 설명회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 각각의 시·군·구에서 개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음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 (나) 공청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최 공고
  -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 결과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4) 주민 의견제출 방법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 의견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일~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의견
  -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 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5)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6)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공개 내용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
- 공개 시기
  -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
- 내용 게시장소
  - 성남시, 과천시, 서초구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내용 게시기간
  - 14일 이상 게시

## 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

### (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국토교통부), 협의기관(환경부) 및 관계 행정기관(서울시, 경기도, 서초구, 성남시, 과천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기간 :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공고 주체
  -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서초구, 성남시, 과천시)
- 공고 시기
  -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 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 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성남시, 과천시, 서초구 홈페이지
    -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공람 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서 제외)
- 공람 장소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성남시, 과천시, 서초구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 (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가) 설명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설명회 개최 주체
  - 사업시행자
- 설명회 시기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내
- 설명회 장소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 각각의 시·군·구에서 개최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음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 (나) 공청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최 공고
  -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 결과
  -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최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4) 주민 의견제출 방법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
- 의견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일~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의견
  -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서초구, 성남시, 과천시)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5)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공개 내용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
- 공개 시기
  - 사업계획 확정 이전
- 내용 게시장소
  - 성남시, 과천시, 서초구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내용 게시기간
  - 14일 이상 게시



## 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div data-bbox="220 362 732 111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b>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질, 소음·진동, 지형·지질 등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계획 노선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li> </ul> <p><b>2. 대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에 직접 접속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가하고, 대안별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인 선정·제시</li> </ul> <p><b>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b></p> <p>가. 전략환경영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식물상 조사는 야생생물의 이동 특성(번식기 등), 개화기 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실시</li> <li>○ 대기질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li> <li>○ 현황조사(대기질, 수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등) 지점은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을 고려하여 충분히 선정</li> </ul> <p>나. 환경영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 현황조사는 계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사</li> <li>○ 사업지역 주변 주거지역, 학교 등 정온시설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영향예측을 빠짐없이 실시</li> <li>○ 계획노선 주변에 운영 및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을 평가</li> </ul> </div>	<div data-bbox="863 362 1375 71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견 수렴은 사업대상지역과 영향권으로 설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관할구역에 공람 장소 설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li> </ul> <p><b>5. 기 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동 협의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2호, '20.12.22)」 등에 따라 작성</li> </ul> <p style="text-align: right;">2021. 2. 19.</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p> </div>
<div data-bbox="220 1258 732 201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p> <p><b>□ 총괄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각 항목의 선정이 적절함.</li> <li>○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사업 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여야 함.</li> </ul> <p><b>□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b></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증가할 것이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타당함.</li> </ul> <p><b>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질, 소음진동) 운영시 사업지구내 주거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충분히 조사 대처 필요</li> <li>○ (토양) 토양오염유려 개연성이 있는 토지의 경우 세부적 실태조사 필요</li> <li>○ (자연환경자산) 사업지역 내 녹지지역이 큰 면적을 차지하는 만큼 자연환경 자산에 대한 조사 및 영향에 세부적 예측이 필요하며 합당한 대책 수립</li> <li>○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한강H유역에 포함되므로 할당부하량을 산정하여 별도의 협의가 필요함.</li> </ul> <p><b>6. 기타 추가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초구 구간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에 대한 보전 방안의 세부적 검토 필요.</li> </ul> <p style="text-align: right;">2021. 02. 23.</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소속 서초구 푸른환경과 성명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p> </div>	<div data-bbox="863 1258 1375 201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p> <p><b>□ 총괄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계획구간에 대해 성남시 도시생태현황지도(Biotop Map)를 참고하여 보호대상 동식물상의 서식여부등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li> <li>○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과 운영에 따른 미산먼지, 소음, 진동, 수질, 대기 영향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li> </ul> <p><b>□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b></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 또는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사업구간 내 향후 개발계획 검토 필요</li> <li>○ 계획구간 내에 성남시 도시생태현황지도 1등급지가 포함됨에 따라,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관련 영향분석 시 계획구간과 인접한 산림(녹지)지역에 대하여 정밀한 조사가 필요.</li> </ul> <p><b>2. 토지이용 구상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개발조사 중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관련 검토를 포함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개정으로 2021년말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바, 해당 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반영하기 바람</li> <li>○ 법정보호종 및 지역보호종 서식현황 등 포함</li> <li>○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작성방법(별표 3)에 따라 토지이용구상안은 1:3,000내지 1:25,000도에 토지이용구상안을 제시하여 하는 바, 계획구간이 산림, 녹지, 거주지를 인접하여 1:3,000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li> <li>○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생태하천과 협의하기 바람</li> <li>○ 목표생태면적률(개발사업유형별 달성목표 고려) 설정(생태면적률 적용지침, 환경부 2016.7.1.)</li> </ul> </div>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초안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No Action을 포함하여 제안하고 있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임을 인정할 수 있는 비교 검토 자료 제시</li> </ul>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국토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li> <li>○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 구분하여 평가대상 범위 검토</li> <li>•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동식물상): '간접영향권' (부지경계 0.5km 이내)으로 범위 확대하여 직접적인 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영향발생 예상지역으로 검토 필요</li> <li>• 수환경보전: 간접영향권 사업지구 주변 수계 하류 약 1.0km로 확대</li> <li>• 소음진동: 직접/간접영향권을 부지경계 0.3km, 0.5km 이내로 구분 검토</li> </ul> </li> <li>○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과 운영에 따른 주변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li> <li>○ 자연환경, 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등의 4개질 조사와 특히, 소음·진동 영향은 야간 및 심야시간대 예측에 유의하여 작성</li> </ul>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 녹지훼손 등 인근 지역 주민의 다수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함</li> </ul> <p>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p> <p style="text-align: center;">2021. 2. 23.</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input type="text"/></p>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b></p> <p>□ 총괄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현남~관교)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우면산 터널 직접 연결(서울방향)계획은 과천·의왕·안양 방향 교통량 해소와는 무관하며, 서울 방향 통과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계획은 수용불가함. 또한 도로연결부(터널 또는 고가도로)는 주변 주택지와 단절되고 심 형태로 형성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되어 과천시로 직접 연결은 불가하니 과천시계 외로 선형 계획도가 필요함.</li> <li>당해 사업에 의해 단절토지 및 지역내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고속도로(안)은 주거지내(주안동 죽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과천주안지구)를 통과하여 정주환경 및 도로교통 안전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함.</li> </ul> </li> </o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2-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과교통은 환상(순환)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처리하여 도심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우회도로나 환상(순환)도로변은 직접폭의 완충녹지의 설치, 교차지점의 입체화 및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만을 접속시키는 등 통과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통과용 도로와 면하여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통과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li> </ul>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천주안 공공지원 민간입대주택공급촉진지구와 인접하므로 해당 민간투자사업 검토·추진시 사업시행자(LI)와 협의하시기 바람.</li> </ol>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li> <li>토지이용 구상안</li> <li>대안</li> <li>평가 항목·범위·방법 등</li> <li>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li> <li>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적인 측면에서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강기 1번~5번)은 사업노선에 대한 협의(사업시행 동의여부 등)가 선행된 후 의견 개진할 사항인 바,</li> <li>- 향후 과천시 도로·교통·도시정책·개발 부서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 노선이 결정된 후 별도 검토가 필요함.</li> </ul>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2021. 3. 10.</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과천시 환경위생과장 <input type="text"/></p>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p>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노선은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10.7km)하는 사업으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대안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 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li>- 계획노선 주변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 실시</li> </ul> </li> <li>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도로 및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을 예측·검토하고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되는 구간의 위치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ul> </li> <li>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의 목적, 주변 토지이용상황, 입지 여건 및 환경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와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고, 각 대안별 선정 사유와 최종안을 제시하여야 함</li> <li>- 계획노선 인근 점선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기,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노선 선정</li> </ul> </li> <li>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사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 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li> <li>○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ul> </li> </ol>

○ (대기질, 온실가스)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포함) 영향 등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수질, 지하수) 토사유출, 우수,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터널 굴착 등에 따른 지하수 영향, 터널폐수로 인하여 주변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소음·진동) 터널공사 발파 시 및 공사·운영 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경관) 사업시행 시 산림훼손 구간, 절·성토 사면 발생지역, 교량설치 지역 등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경관영향을 예측(경관시뮬레이션)하고,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여부 검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들이 공담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

○ 문헌자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시 상기 제시된 심의의견의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21. 2. .

심의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총괄의견

○ 본 진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연장 10.7km)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다수의 노선대안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적 영향(생태계 현장조사 등에 근거한 평가, 지형훼손의 정도, 경관적 영향 등)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대기질, 소음, 지역주민 수용성 등)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친환경적 최적 노선 선정 과정 및 결과의 구체적인 명시 필요

○ 계획노선 내 교량, 터널, 출입시설, 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대안 검토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계획노선 주변의 타 교통시설 등을 고려한 소음진동 누적평가를 통한 적정성 검토

○ 계획노선 통과구간을 대상으로 생태계 등의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최소화 및 민감지역(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보존을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 검토

○ 계획노선의 터널통과구간을 대상으로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 유출에 따른 환경적 영향(지하수위 저하, 지반침하 등)의 면밀한 검토

○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하천구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검토

2021. 2. 23.

심의위원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총괄의견

○ 본 계획노선은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여 양재대로 및 경부고속도로의 지·정체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 따라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하여 대안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대상지 주변 토지이용현황 및 사업의 시행으로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것이며, 특히 인접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검토하고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되는 구간은 위치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 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공간적 범위 설정시 사용된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및 관련자료 등을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도로사업으로 본안 작성시 도로소음 및 대기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충분히 검토 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사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 및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자료를 반드시 수록·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원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12)

2021. 2. .

심의위원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2. .

심의위원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 총판의견
- 상습정체 구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 당위성이 충분하나 야생생물보호구역과 옛골유원지 통과구간에 대한 민원발생에 따른 부작용을 저감하기 위한 계획수립이 병행되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 및 영향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3. 대안
    - 경부고속도로 양재구간의 상습 정체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추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옛골유원지(성남시 구간) 통과구간의 경우 민원 발생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청계산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터널화 계획은 향후 3차제안 등 사업승인 과정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터널 입출구 계획 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노선이 기존 도로와 연계되어 계획되어 있으므로 운영 시 소음예측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하고, 필요시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주민요구 시 공청회 개최 등 주민들에게 본 사업에 대하여 충실히 알리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2. 22.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 총판의견
-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환경영향 및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노선에 의한 토지편입 등으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적의 노선을 계획하여야 함.
  3. 대안
    - 양재IC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가능한 계획이라면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노선으로 인한 신규로 연결되는 선암나들목 및 우면분기점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서초구의 자량인 청계산에 지정되어 있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을 보호할 수 있는 노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도로 개설로 인한 주 오염원인 대기 및 소음 등에 대한 중점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도로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의견 수렴 시 신문, 인터넷, 행정조직 등을 통해 충분히 알리야 하며,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1. 2. 23.

심의위원